

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전화번호	
신청내용	굴취·벌채장소			
	이동할 장소			
	수 종		수량 그루	
	확인증 발급수량 부(장)			
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선충병 감염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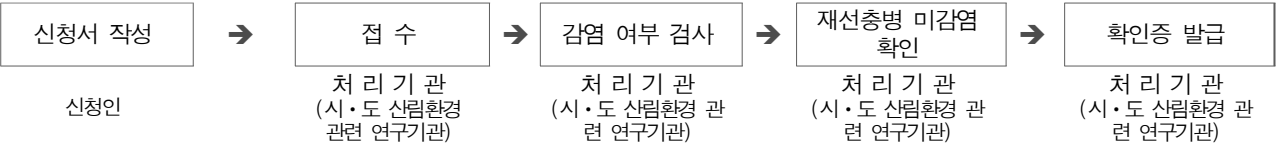
시·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	------------

유의사항

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굴취·벌채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이외에도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별도의 굴취·벌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